

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 - 198 호

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
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.

2011년 10월 18일

식품의약품안전청장

임시마약류 지정

1. 임시마약류 지정 사유

최근 해외에서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흥분제로 오·남용되어
공공 보건상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 아래의 물질에 대하여, 국내에서도
국민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

가. 영국, 스웨덴 등에서 마약류로 지정 및 미국에서는 남용자들의
사망사례 발생 등으로 '11.10월 임시마약류로 지정

나. 메스케치논, 암페타민과 유사독성의 가능성이 있는 최신 합성성분
(비의료용)

2. 임시마약류의 명칭

가. 품명 :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(Methylenedioxypropylone, MDPV)

나. 화학명칭 : 1-(benzo-1,3-dioxol-5-yl)-2-(pyrrolidin-1-yl)pentan-1-one

다. 함유제품 : Legal coke, Speed, Cloud9, Ivory Wave, Ocean,
Vanilla Sky, Sextacy

3. 임시마약,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대마의 구분

임시향정신성의약품(가목)

4. 임시마약류 지정의 효력 기간 등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

가. 효력기간 :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('11.11.21. 공고 예정)

* 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음

나. 취급사항 :

①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는 소지·소유·사용·관리·수출입·제조·
매매·매매의 알선·수수 행위가 금지됨.

②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청장의
승인을 받아야 함.

다. 취급 및 처분 :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5조, 제41조,
제47조, 제58조, 제59조, 제60조, 제61조